

88 . 9 . 16 .

1.

○

('88. 5. 7)

가

,

○

가

113

"

가

"

2.

○

-

.

-

.

○

-

,

,

,

,

○

.

1 ()

113 1

.

.

2 ()

,

(" ")

.

(" ")

.

,

.

3 ()

.

.

,

.

.

4 ()

,

,

,

,

(

" ")

.

1

,

,

.

5 ()

6 5

,

,

.

6 ()

,

가

.

7 ()

가

.

8 ()

1

.

1.

2.

가

3

2가

가

가

가

가

,

3.

가

9 ()

,

,

,

가

10 ()

,

가

11 ()

,

12 (가)

1

13 ()

(별 표)

차량의 차종, 차형, 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에 관한

차종		차형	배정대상	최단 운행 기준연한
승용	전용	대형승용차 (배기량 1,800cc 초과)	0 서울특별시 0 부시장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	의전용	대형승용차 (배기량 1,800cc 초과)	0 서울특별시의 본청 0 1급이상의 각급기관 0 기타 서울특별시가 업무의 성격상 차량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		중형승용차 (배기량 1,500cc 초과 1,800cc미만 의 총중량 1,300 kg 초과)	0 구의 본청 0 서울특별시의 공관 0 2급이하의 각급기관 0 기타 서울특별시가 업무의 성격상 차량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승용	경보용	대형승용차 (배기량 1,800cc 초과)	0 서울특별시의 본청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	업무용	중형승용차 (배기량 1,500cc 초과 1,800cc미만 의 총중량 1,300 kg 초과)	0 3급이상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 0 교육,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장사조방등 의원을 안내하는 기관 0 기타 서울특별시가 업무의 성격상 차량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
차 종	차 형	배 정 대 상	최단운행 기준연한
	중소형승용차 (배기량 1,300cc 초과1,500cc이하 의 중 중량1,300 kg 이하)	0 4급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 0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	소형승용차 (배기량 1,300cc 이하)	0 각급기관 업무용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
	짙형승용차	0 각급기관의 비상계획및 민방위업무용 0 업무의 성격상 짙승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승 합 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 35인이상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
	중형승용차 (승차정원 13인이상 35인미만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 12인이하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
차종	차형	배정대상	최단운행 기준연한
화물용	대형화물차 (적재정량 6톤 이상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	중형화물차 (적재정량 2톤초과 6톤미만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	소형화물차 (적재정량 2톤이하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
특수용	특수작업차 (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)	0 각급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